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하여 지역의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도민이 활발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
○ 충청북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 (안 제4조)

○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(안 제6조~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위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민이 문화를 활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충청북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(안 제4조)과 지원경비의 관리(안 제5조),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10조)으로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임.
- 도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뿐만 아니라 도내에 소재한 사립박물관,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. 끝.